
입 법 정 보

2020-2호



목 차



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4
2.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5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5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7
5.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7
6. 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7
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8
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9
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9
10.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
1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
1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3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3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4
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5
17.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5
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6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6
2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7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7
22.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18
23.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9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20
2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0
26.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1
2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2
2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3
29.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4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4
3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6
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6
33.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7
34.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7

35.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8
3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8
3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9
3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9
39.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9
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1
4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	31
4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3
43.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4
4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4
4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35
46.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5
47.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경찰청)	36
4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7
4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8
5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8
5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39
5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9
53.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	40
5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2

정부입법 예고

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20. 1. 13. • 마감일자 : 2020. 2. 24.
- 산림보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으로 시·도지정문화재를 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사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한 산업단지에 포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행위를 산림보호구역내 가능한 행위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 주요내용
 - 가.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안 제3조제2항제18호)
 - 1) 산림보호구역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행위를 행위제한에서 허용함
 - 나. 농공단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포함(안 제6조제2항제1의3호)
 - 1)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해제 대상에 포함함
 - 다. 시·도지정문화재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포함(안 제6조제7항)
 - 1) 산림보호구역내 위치한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재 구역과 중첩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
 - 라.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 (안 제12조의12)
 - 1) 질병,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나무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하도록 하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마. 과태료 부과기준(풍등 등 소형열기구) 신설(별표 4)

모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실적보고
토록 하며, 전자인계서 입력대행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
해 개선

○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처리실적보고 증빙 보완(안 제27조)

- 1)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시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적정 처리 유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2)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시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
료 첨부토록 제도 개선
- 3)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인계서 입력대행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3)

-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시 행정처분 기준이 없음
-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3)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다. 단순 검토사항 민원 처리기한 단축(별지 제10호, 제11호의2, 제14조 서식)

- 1) 사무별 민원 처리기한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 검토사항
도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
-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수집 운반 대상 건설폐기물 변경, 수
집 운반차량 증차, 건설폐기물처리업 상호 변경, 건설폐기물 처
리시설 상호 변경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
- 3) 민원 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 편의성 도모

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보고 시 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 처리
내역 포함(별지 제30호 서식)

-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중간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이
통계로 잡히지 않는 문제 발생
-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실적보고 시 제
출토록 개선
- 3)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통계관리로 중간처리과정에서
순환골재 회수율 산정이 가능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20. 1. 15.
- 마감일자 : 2020. 2. 24.
-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수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하수처리 시설 공사에 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한 경우에 추가 할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하수도법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공사를 한 경우, 증가된 배출량에 대한 추가할당 조항 신설

5.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20. 1. 15.
- 마감일자 : 2020. 1. 22.
- 국산밀의 생산 여력은 있지만, 소비기반이 취약한 국내 밀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밀산업육성법」이 제정(2019.8.27. 법률 제16545호)됨에 따라 생산·유통단지 지정요건 설정,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집단급식시설의 범위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안 제5조)
 -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관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마련함.

6. 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20. 1. 15.
- 마감일자 : 2020. 2. 4.
- 국산밀의 생산 여력은 있지만, 소비기반이 취약한 국내 밀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밀산업육성

법」이 제정(2019.8.27. 법률 제16545호)됨에 따라 생산·유통단지 지정
요건 설정,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집단급식시설의 범위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시행령안 중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누락된 조항을 추가
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안 제4조)

1) 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안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
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

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1. 16.

• 마감일자 : 2020. 2. 25.

○ 스마트도시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시행자 요건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 인증 제도
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 및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
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출
자 요건 구체화(안 제17조)

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근거 규정(안 제22조)

다.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기관 지
정, 평가 의뢰 등 평가 방법을 구체화(안 제25조 및 제27조)

라. 국가 시범도시 등 원활한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
정비(안 별표3)

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20. 1. 17.
- 마감일자 : 2020. 2. 26.
- 2019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신규 등재된 물질 중 “과불화옥탄산” 이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까지 총 175종이 등재됨에 따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협약 등재물질의 종류를 환경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또한, 일몰이 설정된 규제에 대한 정비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20. 1. 17.
- 마감일자 : 2020. 2. 3.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며 그 재원을 정하는 한편,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도 지방소비세액의 35퍼센트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의2 신설)

- 1)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시·도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4명 및 지방재정·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조정
(안 제12조의3제1항)

-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에 안분하는 지방소비세액의 9분의 5의 35퍼센트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도 지방소비세액의 35퍼센트로 조정함.

다. 전환사업보전계정 신설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별 재원·용도 정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안 제13조의5 신설)

-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의 일부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납입됨에 따라 해당 용도로 운용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정지원계정,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의 각 용도 및 재원을 조정함.

라.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 분석 및 성과 분석 평가의 절차 등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월 31일까지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성과 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6월 30일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 분석에 대한 평가를 10월 31일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10.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20. 1. 17.
- 마감일자 : 2020. 2. 3.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 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주민참여 방법 등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의 항목을 정하는 한편,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의 규정 신설 및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 기준 명확화(안 제35조의7)
 - 1)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비과세 또는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액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범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액을 제외하려는 것임
 - 나. 조정교부금 중복산정 방지(안 제36조의2)
 - 1)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데 사용한 지방소비세를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조정교부금 중복 계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 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범위 확대 및 평가항목 규정(안 제46조)
 - 1) 주민참여 범위를 종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라. 지방소비세 세입처리 특례 신설(안 제47조)
 - 1)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데 사용한 지방소비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 이

아닌 ‘지방세수입’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례를 신설함

1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20. 1. 17.
- 마감일자 : 2020. 2. 26.
- 「동물보호법」 제24조는 유실·유기동물과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적 허용 사유가 넓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예외적 허용절차를 마련함
- 주요내용
 - 가. 유실·유기동물,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 예외적 허용 사유 축소(안 제23조)
 - 1) 유실·유기동물,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1.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연구 또는 2. 사역견 선발 또는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 개정하고,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실험할 수 있도록 함
 - 나.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예외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 1)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설치한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동물해부실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동물의 사체를 대상으로 해부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허용하고자 함

1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20. 1. 17.
- 마감일자 : 2020. 2. 26.
-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과 단속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위임으로 조사권한이 없어진 시·도지사에게도 일부 원산지표시 조사·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을 추진함
- 주요내용
 - 가. 법률상 구분이 명확한 업종을 대상으로 관리주체, 유통규모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 조사·단속권한을 시·도와 시·군·구에 배분(안 제9조제3항)
 - 1) (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에게 대규모 점포, 중앙도매시장, 위탁급식소의 원산지 관리권한 부여
 - 2) (개정 사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시·도지사의 단속권한이 없어져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운영 중인 시·도의 원산지표시 단속에 어려움 발생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1. 17.
- 마감일자 : 2020. 2. 2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실효 대상 국·공유지를 공고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 및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과 일체의 기능을 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기준 규정(안 제13조의2)
 - 1)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기

능을 유지할 수 없는 국·공유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공고 기한, 공고의 내용, 협의절차 등을 규정함.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완화(안 제34조제 1항, 제2항)

1)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변경하고, 공원관리청이 조례를 통해 추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다. 점용허가 대상 확대(안 제22조제2호)

1) 점용허가의 대상에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인 열수송관을 열수송관과 일체의 기능을 하는 열수송시설로 변경하여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인 공동구와 일체의 기능을 하는 송전선로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안 [별표2])

1) 주민편의증진을 위해 주차장,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도서관, 보건소·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1. 17.

• 마감일자 : 2020. 2. 26.

○ '2019년 테마규제 혁신과제'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소공원·어린이공원에서 소규모 도서관(1층, 33㎡ 이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공원에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한 증개축을 허용 및 유치원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소규모 도서관 설치허용(안 제9조)

1) 소공원·어린이공원에 도서관 설치가 제한돼 있으나, 어린이의 교양 함양을 위한 소규모 도서관(33제곱미터 이하, 1층) 설치허용

나. 기숙사 설치가 가능한 대학 종류에 전공대학 포함(안 제11조)

- 1) 도시공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 기숙사 요건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

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증·개축 허용(안 제9조)

- 1) 어린이공원에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문제,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개축 등 허용

라. 유치원 설치기준 마련(안 제11조)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치원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에 대해서도 명확히 명시

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20. 1. 20.
- 마감일자 : 2020. 3. 2.
- 친환경 청정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 잠실수중보 상류의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도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2. 27.] [법률 제16615호, 2019. 11. 26., 일부개정]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환경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친환경 청정사업의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통보 대상 등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모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임

17.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20. 1. 20.
- 마감일자 : 2020. 3. 2.
-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19.11.18, 법안등기) 및 수도법 개정('19.11.26시행)에 따라 수도용자재 위생 안전 인증 관련 업무 권한

위탁 기관을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 인증 및 인증취소 등 관련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위탁하여 일괄 수행토록 함

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20. 1. 20. ● 마감일자 : 2020. 3. 2.

○ 과징금 부과기준이 불법배출이익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6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매출액 범주, 위반횟수 등에 따른 기준부과율 및 자진 신고시 감면 기준 신설(안 제3조)

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징금심의위원회 설치(안 제4조)

다. 과징금 부과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안 제7조 및 제17조)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20. 1. 20. ● 마감일자 : 2020. 3. 2.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 등 종사자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인재 채용의 애로사항을 경감하는 한편,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시설장 및 관리업무 책임자)의 자격기준 제한 완화(별표1 제 나호 개정)

1)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전공 분야 확대

- 2) 실무경력 기준을 청소년 및 사회·문화 분야 관련 업무까지 확대
-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에 응모가능한 공무원의 직급 하향(3급→4급)
- 4) 시설장과 관리업무책임자 간 자격체계의 통일성 부여

2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1. 20. • 마감일자 : 2020. 3. 2.
- 건설공사 별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별점 측정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등 별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 등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 별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동도급하는 경우 별점 부과 대상 변경(제87조 제2항)
 -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 정비(별표 8)
 - 1) 별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 2) 별점 측정기준 등 별표 8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
 - 3) 별점 측정기관에서 책정한 별점에 대해 별점 부과대상자가 제출하는 의견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이 검토하도록 규정
 - 4)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변경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20. 1. 21. • 마감일자 : 2020. 3. 2.
-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위험특성이 유사한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 별표 2 및 별표 5)

1)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등과 전기저장시설 확대와 더불어 화재도 증가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2) 이에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중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2.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20. 1. 21.
- 마감일자 : 2020. 3. 2.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19.8.20. 개정, ' 20.2.21. 시행)으로 폐교재산이 야영장 용도로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폐교재산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부지면적 및 건축물 면적에 관한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가족호텔업 등급결정이 의무화됨에 따라('19.11.19.) 등급결정 미신청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야영장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 적용 제외(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1)(아) 단서조항 신설)

1) 야영장업 등록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도록 하던 것을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적용 제외

2) 시도교육청 보유 폐교 1,409개소 중 554개소(39.3%)의 폐교 내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 야영장 등록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나.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야영장을 등록할 경우 전체면적 및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 제외(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1)(자) 단서조항 신설)

1)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서 야영장업 등록 시 전체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면적은 300제곱미터 미만이도록 하던 것을 폐교를 추가적인 진입도로 및 건축물 신설 없이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제외

2)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위치한 폐교 83개소 중 29개소(34.9%)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 보유, 62개소(74.7%)의 건축물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 야영장 등록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다. 등급결정 미신청 가족호텔업에 대한 과징금을 2성급 이하 관광호텔 및 소형호텔업에 준하여 200만원으로 규정(시행령 별표3 개정)

23.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20. 1. 21.
- 마감일자 : 2020. 2. 10.

○ 「축산법」 개정(법률 제16550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와 관련 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식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 29조의2 신설)

나.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5조의2 신설)

1)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사항을 규정함

- 2)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통합증명서 열람·발급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3) 그 밖에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방법, 정보시스템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20. 1. 21.
- 마감일자 : 2020. 3.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27. 공포, 2020.5.27. 시행)되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회계감사 예외규정 적용배제, 환매연기 사유 추가, 보고의무 신설, 제재근거 마련 등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20. 1. 22.
- 마감일자 : 2020. 3. 4.
- 임시승선자의 대상을 현실화하고, 국제협약 위반선박이 항해정지 명령 등에 불복하고 무단 운항 시협약증서의 효력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복원성에 영향이 없는 선박의 개조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일정기간 경력을 갖춘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 자격을 확대하고, 선박검사 후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임시승선자 및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 개선(안 제5조, 별표6)
 - 1) 가축, 동물, 활어 및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를 화물관리인으로 인정하고, 화물관리인의 최대인원산정 시 거주구역의 단위면적을 선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 나. 국제협약 위반선박에 대한 제재 및 전자증서 발급근거 마련(안

제26조, 제82조의2)

- 1) 국제협약 위반에 따른 항해정지 명령 등에 불복하고 무단으로 운항할 경우 해당 선박의 협약증서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상업무 경감을 위해 전자적 형태의 선박검사 증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대상 및 절차 보완(안 제32조)

- 1) 동일한 형식의 설비로 교체 등 선박 복원성에 영향이 없는 시설의 개조 또는 변경의 경우는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허가 신청 시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복원성 자료를 제출토록 함

라. 선박 검사원 자격기준 확대 및 정부대행기관 지도감독 근거마련(안 제45조, 제62조, 제88조의2, 제89조의2, 제97조의2)

- 1) 3급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경우 학력에 관계없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승인시험기관 등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근거를 마련함

마.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검사신청 양식의 인정(안 제82조의3)

- 1) 선박소유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공하는 통합서식으로 선박검사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협약증서양식 개정 및 용어순화(안 별지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의2호, 제16호, 제16의2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등)

- 1) 국제해상안전협약 등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른 국제협약증서의 양식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

26.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20. 1. 22.

• 마감일자 : 2020. 3. 3.

- 영업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휴업·폐업·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삭제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등 일부사항 이외에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입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대상을 완화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업·폐업 등 신고기한 삭제(안 제7조제1항)

- 1) 현행 규정은 영업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휴업·폐업·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료수급, 생산일정 등에 따라 휴업·폐업 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기한을 삭제함.

나. 수입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대상 완화(안 별표 3)

- 1)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및 법 제14조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을 정밀검사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다.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표시·광고의 제한 폐지(안 별표 4)

- 1) 현행 규정에서는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등 일부사항 이외에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폐지함.

라. 행정처분 경감기준 개선(안 별표 7)

- 1) 위생용품을 수입·위생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2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20. 1. 22.

• 마감일자 : 2020. 3. 2.

-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법률 제16796호, '19.12.10 개정)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도시가스 품질검사 주기와 품질

검사결과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를 포함하고
검사주기와 품질검사결과에 대한 처리 등을 설정 (안 별표 10)

2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20. 1. 22.
- 마감일자 : 2020. 3. 2.

○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사설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 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위탁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안 제70조의2 및 별표 25 신설)

- 1) 카지노기구 검사의 신뢰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카지노기구 검사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기준 등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함.

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안 제71조의2 신설)

- 1)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검사기관의 위탁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안 제71조의3 및 별표 26 신설)

- 1)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

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29.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1. 22. • 마감일자 : 2020. 3. 2.
-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조사와 설치 안전기준,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및 미끄럼 안내표지 설치 등을 규정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6831호, 2019. 12. 24. 공포. 2020. 6.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안내문에 포함될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경사진 주차장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강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 1) 경사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또는 비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 나.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안 제6조)
 - 1) 40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사진 주차장 안전 지도점검(안 제4조·제6조·제11조)
 -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범위에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대규모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등을 포함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1. 22. • 마감일자 : 2020. 3. 4.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분야별 기본교육의 통합, 발주청 기술인 교육 신설, 교육 이수시기의 통일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서비스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인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 1) 현행 경력관리 및 교육 제도에서는 건설기술인을 3개 분야(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제3호 신설).

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정비(안 <별표 3>)

- 1) 현재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마다 기본교육(최대 3회)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 분야와 상관 없이 기본교육을 1회만 받도록 일원화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2) 공공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역량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 3) 현재 계속교육 이수시기가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 마다 상이하여 교육 이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분야 업무 수행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도록 이수시기를 통일하도록 함.

다.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정비(안 <별표 4>)

- 1) 원격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해당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1. 22.
- 마감일자 : 2020. 3. 4.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파산 등 일정한 경우에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적용대상 공사 및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정비하는 한편,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공제부금 일액범위를 인상하여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1. 23.
- 마감일자 : 2020. 2. 12.
- 2020년 개최예정인 2개 국제행사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하고, 수익금 집행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배분금액 등 사전통보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요 국제행사 추가(안 별표2)
 - 1)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2020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 등 2개 국제행사를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
 - 나. 배분액 등 사전통보 규정 마련(안 별표2)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금 총액과 연도별 배분액을 전년도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 통보하는 규정 추가

33.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20. 1. 23.
- 마감일자 : 2020. 3. 3.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뿐만 아니라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토록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문회의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 참여 의무화(제3조의2 제3항)
 - 1)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여성농어업인이 참여토록 개정

34.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20. 1. 23.
- 마감일자 : 2020. 3. 3.
-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심의대상을 변경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대상 기술 해당 여부로 조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 나.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공동으로 하며, 위원의 위·해촉,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운영세칙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 다.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의장은 교대로 하며, 소집 사유를

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국제기준 및 최신안전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며, 그 밖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111조의2, 제112조의2, 제112조의3, 제114조의2, 제117조의2)

1) 속도제한장치,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이상경고장치, 풍속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2) 특히, 원격조종방식의 경우 조종사가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및 중량물 인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안 제102조, 제107조의2, 제108조의2, 제108조의3, 제120조의5, 제120조의6, 제122조의2)

1) 타워크레인의 웨이트, 유압상승장치, 선회장치, 마스트 쉘 발판, 이름판 등의 설치기준을 국제표준 등에 맞게 규정하도록 함

다. 트럭식 건설기계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139조의2, 제143조의3)

1)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트럭식 건설기계에 졸음운전사고 등을 예방 할 수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라.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 확대 적용(안 제133조의2)

1)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고전원전기장치 및 축전지 등의 안전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마. 무한궤도식 굴착기의 접지압 기준 삭제(안 제11조)

1) 버킷 산적으로 접지압을 구분하는 경우 안전과는 무관하게 기술개발이 제한되므로, 해당 조항의 삭제를 통한 다양한 작업장치의 개발이 기대됨.

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20. 1. 28. ● 마감일자 : 2020. 3. 10.
-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와 서식을 개정하여 수중레저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규제 개선 (안 제9조제3호)
 - 1)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발광 조끼나 띠 외 야간 활동 시 위치식 별이 가능한 발광 장치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 나.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 1)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7.26.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변경

4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20. 1. 28. ● 마감일자 : 2020. 3. 10.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8.27.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요건으로 직전년도 말 기준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5억원, 10억원, 30억원으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하여 규정 (안 제3조제1항)
 -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려는 경우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는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할 것 등을 규정 (안 제10조)
 - 다.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자는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모집되어야하며,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에 우선하여 회수

하지 아니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대하여 준수할 사항들을 규정 (안 제11조)

- 라. 기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준수해야 의무로 이용자에게 거짓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 (안 제12조)
-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 중 제3자에게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로 연계투자계약 체결 등 업무, 연계대출계약 체결 등 업무, 투자자 모집 업무 등을 규정 (안 제15조)
- 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등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등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 25조)
- 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규정 (안 제27조제1항)
- 아. 법인투자자 및 개인전문투자자 이외의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소득적격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 17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2천만원, 총 1억원으로 규정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5백만원, 총 5천만원(다만, 부동산 관련 연계대출상품에 대해서는 총 3천만원)을 한도로 규정 (안 제27조제6항)
- 자.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한도는 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의 경우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20, 기타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100분의 40으로 규정 (안 제30조제2항)
- 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회의 소재지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 (안 제31조)
- 카. 금융위원회는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35조)

4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20. 1. 28.
- 마감일자 : 2020. 3. 9.
- 개정 법령(법률 제16743호, 공포 2019. 12. 10., 시행 2020. 6. 11.)에서 심각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근거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개정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중대한 사안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3제5항)
 -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사고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행위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인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행위
 - 4) 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교육감이 침해행위가 중대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나.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및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 1) 관사 출입문 및 방범창 등 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 2) 관사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망 설치에 관한 사항
- 3) 관사의 노후화에 관한 사항
- 4) 여성 교원-경찰 연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 5)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관할청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3.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20. 1. 29. • 마감일자 : 2020. 3. 9.
-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 정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정원 상한을 현행 31만5,293명에서 32만2,463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4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1. 29. • 마감일자 : 2020. 3. 9.
-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300세대 이상 또는 일정한 요건(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등)을 갖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하여, 자치의결기구 구성 및 전문 관리자 배치, 관리비 공개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구성해야 하는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의 무관심 및 낮은 거주 비율 등의 이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어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381호, 2019. 4. 23. 공포, 2020. 4. 24. 시행) 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기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해야 하는 사항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의사결정 방법을 개선하고,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도 검사기관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추가(제11조)

나. 업종별 유예기간 만료 전 허가를 조기에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재검토 검토주기를 연장(부칙 제2조)

4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20. 1. 29.
- 마감일자 : 2020. 3. 9.

○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공포, 2020.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장소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장소를 정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험지수, 사고 유형 및 원인 등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별표5의2)

46.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20. 1. 30.
- 마감일자 : 2020. 2. 14.

○ 주요내용

가. 「상훈법」(제10조)에서 위임된 서훈의 취소절차 마련

- 1) 서훈의 취소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서 범칙에 따라 형을 받아 취소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2) 서훈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

훈취소를 위해 공판기록, 범죄경력 등 필요한 정보를 보유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부포상업무지침」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

- 1)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침의 대외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상훈법시행령에 지침 제정·운용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다. 서훈관련 기록관리 강화(안 제32조)

- 1) 서훈 관련 기록물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서훈 관련 기록물별로 적정 보존기간을 책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47.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경찰청)

• 예고일자 : 2020. 1. 30.

• 마감일자 : 2020. 3. 10.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2019.12.3. 법률 제16700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선박이 항해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세부 절차 등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규정(안 제2조)
- 나.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및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한 내용 및 공포 방법을 규정(안 제3조 내지 제5조)
- 다. 해양경찰청정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을 규정(안 제6조)
- 라.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지형·조류, 해상기상 등 선박교통관제 시행에 관한 규정을 고시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마.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거나 이동할 때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규정(안 제8조)
- 바. 호출부호, 관제통신시설, 조난·긴급·비상 통신용 채널 등 관제통신의 제원을 규정(안 제9조)

- 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하는 선박과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선박이 녹음해야 할 통신 내용, 방법, 보존기간 등을 규정(안 제10조)
- 아. 선박교통관제사가 수료하는 교육의 종류를 규정(안 제11조)
- 자. 해양경찰청장이 개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를 규정(안 제12조)
- 차.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가 정해야 할 정관의 내용, 해양경찰청장의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업무에 대한 검사 등 및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 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안 제14조)

4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20. 1. 30. • 마감일자 : 2020. 3. 10.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법률 제16713호, 2019.12.03. 공포, 2020.06.04.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국유림이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경우 사용 목적이 상충되지 아니할 경우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의2)
 - 나.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정관, 인력, 시설과 장비 등 일정기준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 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업내용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사회적경제 육성 이외에 거주민·공동체 지원기관의 교류협력, 산림일자리 발굴 등을 추가함 (안 제24조의3제2항)
 - 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지정요건 검토 및 지정서 발급,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제24조의3제3항 내지 제7항)
 - 마.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수행 내용 중 주거환경개선 중심의 산촌개발사업을 산림을 활용하여 거주민의 소득 안정 등 삶의질 개선 목적의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변경함(안 제25조의3)

4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20. 1. 30. • 마감일자 : 2020. 3. 10.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27조의3의 규정을 개정(법률 제16713호, 2019.12.03. 공포, 2020.06.04.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산림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임업소득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등을 위탁할 경우 협약 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1항)
 - 나.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신청기관은 법인명, 대표자명, 설립일, 소재지 등이 기재된 별지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
 - 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 산림청장의 직인이 찍힌 별지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2항)

5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20. 1. 30. • 마감일자 : 2020. 3. 10.
- 대한적십자사는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을 통해 재난 이재민 구호사업, 의료사업,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개인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에게도 회비모금 지로용지가 고지되면서 국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약자를 모금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 관련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에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의 성명, 주소 정보를 반영하여 회비모금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장

애인의 성명 및 주소 정보와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이용 목적(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사무)을 신설함.

5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20. 1. 31. ● 마감일자 : 2020. 3. 11.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외하고,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육성’ 분야는 청소년활동·보호·복지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청소년활동’ 분야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 첨부서류 중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을 제외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안 제5조, 안 별지 제8호서식)
 - 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 분야에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포함(안 제7조)

5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20. 1. 31. ● 마감일자 : 2020. 3. 11.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시 참고할 수 있는 ‘심판’의 범위 확대(안 제4조제4항)
 -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어 지리적표시권 등 보호대상권리가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시 참고할 수 있는 ‘심판’의 범위도 이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 이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중지하고 ‘특허심판’의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심판’의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잠정조치 담보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4조의3)

- 1)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때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문서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제4조의3제4항)
- 2) 무역위원회는 담보 반환 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담보 반환 예정통지를 하도록 함(제4조의3 제5항)
- 3)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입증하면 담보를 반환할 수 없도록 규정(제4조의3제6항)

다.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범위 구체화(안 제10조제5항)

-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19.12.10.)을 통해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3조제4항)
- 2) 이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종류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53.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20. 1. 31.
- 마감일자 : 2020. 3. 13.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법률 제16650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안 § 3)

- 1)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

의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나.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지정(안 § 4)

- 1)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

다. 산출업무규정(안 § 5)

- 1) 산출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절차, 중요지표 설명서,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준수해야할 기준·절차 및 기초자료 제출업무 관리·감독, 산출업무의 위탁시 준수해야할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라. 중요지표관리위원회(안 § 6, 안 § 7)

- 1)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중요지표 산출과 이해상충이 없는 2인 이상의 외부 독립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이해상충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2)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중요지표관리 위원회 해임·선임기준 및 절차,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의 주기적 점검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함

마. 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 고시(안 § 8)

- 1)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절차 및 중요지표 설명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바.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안 § 9)

- 1)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해당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성을 검토할 때, 산출 방법의 내부 검토 및 승인관련 규정·절차, 산출기관의 내부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하는 조직, 산출 방법을 검토 및 승인하는 담당자의 역할 등을 검토하여야 함

사. 자료의 기록·관리(안 § 12)

- 1) 기초자료 제출기관은 다음의 자료를 기록하고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 2)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다음의 자료를 기록하고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3)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다음의 자료를 기록하고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아.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안 § 13)

- 1)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중요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완 지표에 대한 검토, 중요지표 사용기관에 대한 중단사항 통지 및 사후 대응조치,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자. 조치명령권(안 § 15)

- 1)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 제출기관 등에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요지표 산출업무규정 유지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기초자료 제출 또는 중요지표 산출 담당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중요지표 산출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절차 및 제출업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차. 업무의 위탁(안 § 17)

- 1) 금융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지표 산출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심사,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심사, 외국 산출기관 신고의 접수 등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함

5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20. 1. 31.
 - 마감일자 : 2020. 3. 11.
-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관련,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초고령화에 대비, 50세 이상 이직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노력)에 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에 따라 의무 대상, 범위,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 하고 기타 규제의 재검토, 고유식별정보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권한 위임 관련 조항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실시 관련 세부사항 규정(영 제9조의 2제1항 ~ 제6항 신설)

- 1) 법 제11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위임근거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구체화

나. 고용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현행화 (영 제11조 신설)

- 1)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한 지급기준 등 관련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5조의2, 제 28조의4)을 추가

다. 재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구체화(영 제14조의2~4 신설)

- 1) ‘20. 5월부터 시행되는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력) 관련, 법령에 위임된 서비스 제공 의무 사업주, 대상 근로자, 범위 및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라. 권한의 위임사항 추가(영 제15조)

- 1)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적일자리 창출 실시에 대한 사항 및 법 제 21조의3제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마. 규제의 재검토(영 제15조의2)

- 1)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 재검토 시점을 ‘17년에서 ’ 20년으로 현행화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 3 신설)

- 1) 재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라 서비스 지원 및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무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